



본 문서는 웹사이트 www.wagetheft.wa.gov.au의 정보를 복사해 온 것입니다.

서호주 내 임금 착취 신고

근로자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고의적인 최저 임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보기

임금 착취는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나 복리 후생에 대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 착취에 대해 도움을 구하거나 신고를 하는 과정은 사업체의 노사관계체계가 주에 속해 있는지 전국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본 정보는 서호주의 근로자들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 혹은 연차나 장기근속휴가 미지급 해결에 대한 도움 요청
- 관련 정부 기관에 임금 착취를 익명으로 신고
- 퇴직 연금 미지급에 대한 도움 요청

주 및 전국 노사관계체계에 대한 정보

임금 착취 신고를 위해서는 자신의 고용 형태가 어떤 체계에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서호주의 사업체들과 그 고용인들은 사업체나 단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주 노사관계체계 (주 체계 고용주) 혹은 전국 노사관계체계 (전국 체계 고용주)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주 노사관계체계 고용주들은 다음 형태의 업체들이 해당합니다.

- 개인 사업자 (예. 제인스 카페를 운영하는 제인 스미스)
- 비법인 파트너십 (예: 제인스 카페를 운영하는 제인과 밥 스미스)
- 비법인 신탁 체계 (제인과 밥 스미스가 제인스 카페의 신탁관리자임)
- 상거래나 금융 회사가 아닌 법인 협회 및 상거래나 금융 회사가 아닌 기타 비영리 단체

전국 노사관계체계 고용주들은 다음 형태의 업체들이 해당합니다.

- 상거래나 금융 회사인 법인 (Pty Ltd) 사업체 (예. 제인스 카페를 운영하는 Smith Pty Ltd)
- 상거래나 금융 회사인 법인 협회 및 상거래나 금융 회사인 기타 비영리 단체

자신의 고용주 혹은 예전 고용주가 주 노사관계체계에 속해 있는지 전국 노사관계체계에 속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1300 655 266번의 Wageline(임금 상담소)으로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Wageline에서는 사업체 검색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경우 어떤 체계가 적용되는지 안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개별 문제 해결

급여나 고용 복리 후생의 최저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개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구하기 전 - 자신의 올바른 급여율과 휴가 권리를 확인하세요

- 자신의 직장이 주 체계에 속하는/속했던 경우, Wageline(www.dmirs.wa.gov.au/wageline) 에서 급여율과 휴가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1300 655 266번의 Wageline으로 연락하세요.
- Wageline는 서호주의 주 및 전국 체계 근로자들에게 주 장기근속휴가법이 적용되는 장기근속휴가 (www.dmirs.wa.gov.au/longserviceleav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 자신의 직장이 전국 체계에 속하는/속했던 경우,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www.fairwork.gov.au/how-we-will-help)에서 급여율과 휴가 권리(장기 근속 제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13 13 94번의 공정 근로 옴부즈맨으로 연락하세요.

최저 임금 및 연차 휴가 미지급 - 주 체계 근로자

주 정부 등록 협약인 WA 기준임금(WA award)이나 *최저고용실태법*(Minimum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1993)에 의거하여 자신이 최저 임금 혹은 휴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 권리 민원(www.dmirs.wa.gov.au/underpaymentcomplaints)을 제기하시거나, 1300 655 266번의 Wageline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및 연차 휴가 미지급 - 전국 체계 근로자

전국 현대 기준임금 (modern award), 연방 협약, 혹은 공정 근로법 (Fair Work Act 2009) 상의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의거하여 자신이 최저 임금 혹은 휴가(장기근속휴가 제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근로 옴부즈맨 (www.fairwork.gov.au/how-we-will-help)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휴가법(Long Service Leave Act 1958)에 의거한 장기근속휴가수당 미지급

주 장기근속휴가법 (Long Service Leave Act 1958)에 의거하여 자신이 장기근속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장기근속휴가수당 민원 (www.dmirs.wa.gov.au/underpaymentcomplaints)을 제기하시거나, 1300 655 266번의 Wageline으로 연락하시어 민원 제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착취 문제 신고

임금 착취 문제 익명 신고

임금 착취 문제에 관련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체계 고용주

주 체계 고용주 관련 임금 착취 문제나 장기근속휴가 미지급 문제는 Wageline (www.dmirs.wa.gov.au/underpaymentcomplaints)에서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체계 고용주

전국 체계 고용주 관련 임금 착취/최저 임금 미지급 문제는 공정근로 옴부즈맨 (www.fairwork.gov.au/how-we-will-help)에서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지급

퇴직연금 미지급 도움 요청

퇴직연금 금액의 미지급을 신고하고자 하시면, 호주 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 (www.ato.gov.au)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